

I

교육활동 침해 정의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이하 ‘교원지위법’이라 한다.) 제 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‘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,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’라 규정하고 있다.

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근거법령

순	유형	근거 법령
1	상해 및 폭행	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
2	협박	
3	명예훼손, 모욕	
4	손괴	
5	성폭력 범죄	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
6	불법정보유통행위	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
7	공무방해 및 업무방해	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(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)
8	성적 언동	
9	반복적 부당간섭 행위	
10	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합성하여 무단 배포하는 행위	
11	그 밖에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	

II

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

□ 관련 근거: 교원지위법 제18조[법률 제19094호(2022.12.27.)], 교육부고시 제2021-26호

□ 적용 대상: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

- 심각성, 지속성,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, ②사회봉사, ③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, ④출석정지, ⑤학급 교체, ⑥전학, ⑦퇴학처분(고등학교만 해당) 등의 조치를 함
-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도 참여 의무(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)

-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(치료비 등)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함.
다만,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(교육청)이 부담하고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
- ▣ 적용 대상: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외 침해자
 - 형사 고소 고발
 -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통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
III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의무

- ▣ 관련 근거: 교원지위법 제16조의3,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
- ▣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 의무(학기별 1회 권장)
- ▣ 대상별 운영 방법 및 교육 내용

대상	운영 방법	교육 내용
교직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새학년 맞이 기간 활용 및 자체 연수 • 공문에 의한 ‘찾아가는 교권 연수’ 또는 ‘찾아가는 교원 힐링 연수’ 신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•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•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
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과정 연계교육 실시 •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•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•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
학부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입생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과정설명회, 학부모 총회, 수업 공개의 날 등과 연계 실시 • 가정통신문 발송 •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•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•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

IV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

- ▣ 교육부, 17개 시도교육청 개발 <요령레이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영상>
주제 :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육활동 보호, 함께해요!

순	대 상	URL
1	중학교	https://youtu.be/N88r7T4eezo
2	고등학교	https://youtu.be/F8OWwf34AKs
3	학부모	https://youtu.be/pkLMIkzCyZM
4	뮤직비디오	https://youtu.be/e8HhkTYBnzY



실시일정

- ▣ 매월 교직원회의, 교과수업, 가정통신문 발송등으로 수시 교육 실시
- ▣ 교육 실시일

대상	실시 일자	장소 또는 방법	참석인원(명)	비고
교직원	2023. 5.24.	도서관		교직원회의
학생	창의적체험활동시간 활용	각 교실		
학부모	2023.03.15. 학부모 총회 2023.11. 2. 공개수업의 날	체육관 도서관		